

<p>“議會”라 한다)의 本會議가 開議中이거나, 委員會의 會議가 開會中인 때에 議事進行process을 傍聽함에 있어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傍聽秩序를 維持함을 目的으로 한다.</p> <p><b>第2條(傍聽券의 種類 等)</b> ①傍聽券의 種類는 一般市民을 위한 一般傍聽券, 教育機關 기타 團體의 신청에 의하여 10人 以上의 團體를 위한 團體傍聽券, 報道機關 從事者 또는 業務上, 傍聽이 极히 필요한 관서의 職員을 위한 長期傍聽券으로 한다.</p> <p>②傍聽券은 1인당 1매씩 交付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, 發give 當日에 한하여 傍聽할 수 있다.</p> <p>③長期傍聽券은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傍聽券을 發give할 수 있다.</p> <p><b>第3條(傍聽券의 交付)</b> ①傍聽을 하고자 하는 자는 傍聽券을 交付 받은後 傍聽券에 住所, 性名, 職業 및 年齡등 所定의 事項을 記載 하여야 한다.</p> <p>②傍聽券은 議長 또는 委員長의 指揮를 받아 事務處長이 交付하되, 傍聽席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傍聽人 수를 조정발급 할 수 있다.</p> <p><b>第4條(傍聽券의 提示)</b> 傍聽人은 會議場에 立場할 때에 議會事務處 職員에게 公務員證 또는 傍聽券을 提示하고 記載事項 確認 및 携帶品 點檢을 받아야 하며 그 指示에 따라야 한다.</p> <p><b>第5條(傍聽人의 遵守事項)</b> 傍聽人은 傍聽席에서 다음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帽子, 外套를 着用하거나 부피가 있는 物品을 携帶하지 못한다.</li> <li>2. 다과, 飲料等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.</li> <li>3. 議員의 發言에 대하여 可否意見을 表示하거나 拍手를 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으로 議事進行을 妨害하여서는 아니된다.</li> </ol> <p><b>第6條(傍聽의 制限 및 退場)</b> ①총기 또는 危險한 物件를 휴대한 者, 술취한 者, 精神異常者 및 秩序維持에 妨害가 될 憂慮가 있는 者, 기타 行動이 수상하다고 認定된 者는 傍聽을 거부하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.</p> <p>②秩序維持上 필요한 때와 傍聽席의 餘裕가 없을 때에는 傍聽券을 소지한 者 일지도 傍聽을 制限할 수 있다.</p> <p>③議會가 會議를 公開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한 때에는 傍聽人은 議會事務處 職員의 指示에 따라 迅速히 退場하여 한다.</p>	<p>는 者는 傍聽을 거부하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.</p> <p>②秩序維持上 필요한 때와 傍聽席의 餘裕가 없을 때에는 傍聽券을 소지한 者 일지도 傍聽을 制限할 수 있다.</p> <p>③議會가 會議를 公開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한 때에는 傍聽人은 議會事務處 職員의 指示에 따라 迅速히 退場하여 한다.</p>
附 則	
이 規定은 1992.2 부터 施行한다.	
<b>2.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案</b>	
(11時 20分)	
○委員長 金寅東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案을 上程하겠습니다.	
(議事権 3打)	
本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	
○專門委員 梁在大 다음은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	
(報 告)	
1. 制定理由	
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第49條第6項에 의하여 서울特別市議會 會議錄의 作成·發刊·配付·閱覽·複寫 等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기 위함임.	
(다음 페이지에 계속)	

## 2. 主要骨子

區 分	主 要 內 容	備 考
用語의 定義 (第2條)	保存會議錄, 配付會議錄, 臨時會議錄, 非公開會議錄, 參考文書 等	
本會議錄 (第3條)	會議規則 第46條第1項 事項 記載	
委員會會議錄 (第4條)	會議規則 第62條第1項 事項 記載	
臨時會議錄 (第5條)	會議規則 第48條에서 定한 字句의 訂正을 거쳐야 함	
保存會議錄 (第6條)	配付會議錄에 掲載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發言內容을 掲載	
非公開會議錄 (第7條)	非公開會議錄은 原稿로 보관하는게 원칙	
字句의 訂正 (第10條)	會議錄에 正誤表를 掲載하거나 保存會議錄에 訂正하여 掲載함.	
會議錄原稿의 閱覽·複寫 (第11條)	議長의 許可를 얻어야 함.	
錄 音 (第12條)	速記業務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錄音 가능	

## 3. 檢討意見

○國會의 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 관한規程을準用하여 자세히 關聯條項을 記述한 關係로訂正 또는 修正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사료되나

○第5條의 臨時會議錄에 관한 條項의 境遇本會議의 會議錄 關係만 規定하고 委員會의 臨時會議錄 發刊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는 바檢討가 필요하고, 會議錄은 永久 保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會議錄 保存의 部署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바, 이에 대한 檢討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以上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金寅東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었습니다. 質疑와 討論을 하실 委員이 있으시면 質疑·討論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啓 습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 관한規程案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그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権 3打)

(參 照)

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 관한規程

第1條(目的) 이 規程은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(이하 “議會規則”이라 한다)에 의한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 (이하 “議會錄”이라 한다)의 作成·發刊·配付·保存·閱覽·複寫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(用語의 定義) 이 規程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

- “保存會議錄”이라 함은 會議規則 第47條 第1項 및 第62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서울特別市議會(이하 “議會”라 한다)에 영구보존하는 會議錄을 말한다.
- “配付會議錄”이라 함은 議長(委員會會議錄의 경우에는 委員長, 이하 같다)이 비밀을 요하거나 社會의 안녕질서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運營委員會委員長과 協議하여